

대법원 2019. 5. 8 선고 2018가소896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

○○○○개발조합

피 고

대한민국

변 론 종 결

2019.04.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0,462,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. 11. 2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원고가 착오로 잘못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